

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이 법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5조).
-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, 이에 따른 등록 취소나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).
-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함(안 제16조).
-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

도록 함(안 제17조 및 제18조).

-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용후 배터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 및 제22조).
- 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 여부, 배터리 제조에 있어 재생원료 사용 여부 및 함유율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,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).
-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·운송, 효율적인 활용, 배터리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).

II. 검토의견

1. 재제조사업자 등록 절차 일부 미비

- 안 제2조제3호¹⁾는 재제조사업자를 사용후 배터리를 새로운 전기

1) 3. “재제조사업자”란 사용이 종료된 전기자동차등배터리(*)를 구매 또는 획득하여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등배터리로 제작·조립(이하 “재제조”라 한다)하기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16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.

(*)제2조제1호가목: 전기자동차등배터리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
2)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
3)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

자동차등배터리로 재제조하기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
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한 자²⁾로 규정하고 있는데, 건설기계 및 농
업기계는 「자동차관리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, 이에 대해서
는 관련 법률이나 이 법에 재제조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
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³⁾⁴⁾.

2. 중복 조문 정리 및 제재 규정 신설

- 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⁵⁾에서 재제조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를
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등록 및 허가를
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, 등록 및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안
제13조⁶⁾ 및 제14조⁷⁾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- 2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15(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) ①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·조립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재제조 배터리 사업자”라 한다)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(이하 “안전성시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0조제1항,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 · ④ (생략)
- 3) 자동차 배터리 재제조사업자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「자동차관리법」의 경우와 같이,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배터리 재제조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.
- 4) 안 제16조(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) 및 제17조(안전검사대상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)에 따르면,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도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를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, 법체계상 「자동차관리법」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함. 다만, 이 경우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.
- 5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 “재제조사업자”란 사용이 종료된 전기자동차등배터리를 구매 또는 획득하여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등배터리로 제작·조립(이하 “재제조”라 한다)하기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16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.
5. “재활용사업자”란 배터리(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호에서 같다)를 재생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배터리로부터 재생원료를 추출(이하 “재활용”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- 안 제15조제1항⁸⁾에서는 손해 담보를 위해 재사용사업자에 대해 공제사업 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음.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유사 입법례⁹⁾를 고려하여 과태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3. 보칙 규정 보완

-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칙 장(제7장)을 신설하여 청문실시 근거,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구체적으로 ① 안 제9조의 유통사업자 등록취소, 제12조의 재사용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경우 행정의 민주성·신뢰성 등 확보를 위해 청문실시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, ② 이 법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6) 안 제13조(재제조사업자의 등록 등) 재제조사업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고, 업을 영위한다.

7) 안 제14조(재활용사업자의 허가 등) 재활용사업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, 업을 영위한다.

8) 안 제15조(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) ① 재사용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을 구매한 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1. ~ 5. (생략)

9)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0. 제51조제1항(*)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
(*)제51조(보험가입)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4. 그 밖의 사항

- 시행일과 관련하여, 재제조사업자 등록, 전기자동차등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등은 「자동차관리법」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, 이러한 내용의 「자동차관리법」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므로, 이와 관련된 조문의 시행일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문 표현을 수정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III. 관계기관 의견

- 안 제27조¹⁰⁾와 관련하여, 재정경제부는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¹¹⁾과 충돌하는 문제로 관련 내용의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,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관계법¹²⁾이 아닌 다른 법령에 지방세 감면사항을 규정할 경우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의 삭제 의견을 제시함.

10) 안 제27조(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, 재사용 및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1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조(조세특례의 제한) ①이 법, 「국세기본법」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.

1. 「소득세법」 2. 「법인세법」 3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4. 「부가가치세법」 5. 「개별소비세법」
6. ~ 25. (생략)

1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조(지방세 특례의 제한) ①이 법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.

- 국토교통부는 ‘사용후 배터리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포함하고 있어, 각 법률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,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부처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「자동차관리법」상의 사용후 배터리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다양한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(전문위원 박 혜 진)